

제 1608 호  
1991. 11. 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이 해 원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진  
전화 : 731-6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화 : 273-8111~3

# 시 보

## 차 례

- 규 칙  
제 2441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 3
- 고 시  
제 1991-326 호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 6
- 구 고 시  
제 1991- 5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서대문) ..... 7  
제 1991- 5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서대문) ..... 11  
제 1991- 5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서대문) ..... 15  
제 1991- 5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서대문) ..... 17  
제 1991- 5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서대문) ..... 19  
제 1991-336 호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허가변경(기간연기)(서초) ..... 22

(이면계속)

종									
별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유엔은 평화마당 한반도는 통일마당”  
4466

● 구 공 고

- 제 1991-35 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실시계획공람공고(강서)..... 22
- 제 1991-34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노원)..... 23

◎ 사업소고시

- 제 1991- 3 호 도시계획사업(서울대공원)조성계획변경시행허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25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정규직을 이에 공포한다.

1991. 11. 6

서울특별시방 이태원

●서울특별시규칙제2441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의 같이 기정한다.

"별표 1(공무원의 정원) 제2항의 "별표 1"의 순청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223"을 "123"로(조부 "131"을 "36"으로) 하고, 10등급 행정원 "7"을 "102"(위생 "5", 사역 "17" 신설한다)로 한다.

"별표 1-2"의 경찰청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448"을 "415"(조부 "373"을 "340")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3"을 "36"(사역 "33"을 신설한다)으로 한다.

"별표 1-3"의 소방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8"을 "6"으로(조부 "5"를 "3"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2"를(사역 "1"을 신설한다)로 신설한다.

"별표 2"의 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37"을 "5"로(조부 "35"을 "1")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82"를(사역 "32"을 신설한다)로 신설한다.

"별표 2-2"의 농촌지도소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0"을 "7"로(조부 "7"을 "4" 하고 10등급 위생원 "3"(사역 "3"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3"의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공무원정원표 중 가. 사업본부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3"을 "12"로(조부 "5"를 "4"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사역 "1"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나. 사업소정원표 기능직 10등급 중 수도사업소의 사무보조원 "581"을 "557"(조부 "536"을 "527")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24"(사역 "24"을 신설한다)을 신설하며, 수원지사사무소의 사무보조원 "504"를 "487"(조부 "486"을 "469")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7"(사역 "17"을 신설한다)을 신설하며 수도기술연구소의 사무보조원 "4"를 "3"으로(조부 "1"을 "1")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사역 "1"을 신설한다)을 신설하며, 수도시설사업소의 사무보조원 "31"을 "29"로(조부 "29"를 "27")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2"(사역 "2"을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4"의 서울시립대학교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36"을 "10"으로(조부 "27"을 "1")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26"(사역 "26"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5"의 전자계산소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을 "8"로(조부 "3"을 "3"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3"(사역 "3"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6"의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34"을 "31"로(조부 "127"을 "74")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52"(사역 "53"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7"의 난지도 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위생원 "5"의 내용 "(위생 2, 사역 "3"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8"의 위생처리사업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2"를 "1"로(조부 "1"을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사역 "1"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9"의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5"를 "5"로(조부 "12"를 "2"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을 "11"(위생 "1" 사역 "10"을 신설한다)로 한다.

"별표 2-10"의 시립병원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91"을 "90"으로(조부 "181"을 "8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2"를 "113"(위생 "12", 사역 "101"을 신설한다)으로 한다.

"별표 2-11"의 청소년직업훈련원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0"을 "3"으로(조부 "7"을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7"(사역 "7"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12"의 근로자 후생시설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가". 근로자회관의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6"을 "0"으로(조부 "6"을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6"(사역 "6"을 신설한다)을 신설하며

"나". 부녀복지관의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31"을 "10"으로(조부 "25"를 "4"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21"(사역 "21"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다".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2"를 "2"로(조부 "10"을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6"을 "16"(위생 "6", 사역 "10"을 신설한다)으로 한다.

"별표 2-14"의 부녀보호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8"을 "4"로(조부 "7"을 "3"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4"(사역 "4"를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15"의 아동상담소 지방공무원정

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8"을 "4"로(조부 "7"을 "3"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4"(사역 "4"를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16"의 청소년사업관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5"를 "2"로(조부 "4"를 "1"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3"(사역 "3"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17"의 공업시험소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4"를 "2"로(조부 "2"를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2"(사역 "2"를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18"의 세종문화회관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59"를 "47"로(조부 "55"를 "43"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2"(사역 "12"를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19"의 중앙건설본부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가". 공사본부의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6"을 "12"로(조부 "6"을 "2"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4"(사역 "4"를 신설한다)를 신설하며

"나". 지원사업소(건설자재사업소)의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23"을 "13"로(조부 "22"를 "17"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5"(사역 "5"를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20"의 건설자재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4"를 "2"로(조부 "2"를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2"(사역 "2"를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21"의 건설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2"를 "8"로(조부 "4"를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4"(사역 "4"를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22”의 녹지사업소 지방공무원정  
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  
원 “5”를 “2”로(조무 “3”을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3”(사역 “3”을 신설한다)  
을 신설한다.

“별표 2-23”의 공원관리사무소 지방공무  
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  
보조원 “36”을 “21”로(조무 “26”을 “17”  
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9”(사역 “9”를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24”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  
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  
급 사무보조원 “124”를 “111”로(조무  
“121”을 “108”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을 “14”(위생 “1”, 사역 “13”을 신설하  
다)로 한다.

“별표 2-25”의 지하철건설본부 지방공무  
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  
보조원 “15”를 “14”로(조무 “5”를 “3”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사역 “1”을 신설  
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26”의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공  
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  
무보조원 “63”을 “54”로(조무 “9”를 “0”으  
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9”(사역 “9”를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27”의 차량 정비사업소 지방공무  
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  
보조원 “4”를 “2”로(조무 “2”를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2”(사역 “2”를 신설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28”의 교통관리사업소 지방공무  
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  
보조원 “2”를 “1”로(조무 “1”을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사역 “1”을 신설  
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29”의 교통방송본부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  
조원 “13”을 “9”로(조무 “4”를 “0”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4”(사역 “4”를 신설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30”의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지방  
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6”을 “5”로(조무 “11”을 “0”  
으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1”(사역 “11”  
을 신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31”의 하수처리장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가”. 중앙하수처리장의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53”을 “33”으로(조  
무 “49”를 “29”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20”(사역 “20”을 신설한다)을 신설하며

“나”. 탄천하수처리장의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32”을 “21”로(조무  
“28”을 “17”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1”  
(사역 “11”을 신설한다)을 신설하며

“다”. 인양하수처리장의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30”을 “19”로(조무  
“28”을 “17”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1”  
(사역 “11”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라”. 남지하수처리장의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1”을 “10”으로(조  
무 “15”를 “8”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7”  
(사역 “7”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32”의 민방공경보통제소 지방공  
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  
무보조원 “2”를 “1”로(조무 “1”을 “0”으  
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1”(사역 “1”을  
신설한다)을 신설한다.

“별표 2-33”의 소방서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71”을 “36”으로(조무 “46”을 “11”로)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35”(사역 “35”를 신  
설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34”의 항공대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정원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원  
“2”를 “0”으로 하고(조무 “2”를 “0”로)  
하고, 10등급 위생원 “2”(사역 “2”를 신설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2-35”의 소방학교 지방공무원정원

은 기동적 정(내용 중 10등급 사무보조인 "6"을 "2"로(조부 "5"를 "1"로) 하고, 10등급 위양원 "4"자의 "4"를 전철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직업조정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직렬의 조부규유 중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외생직렬에 사무직류의 선원으로 본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991-326호**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74호(89.1.22)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를 서울특별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1. 11. .

서울특별시청

**1. 신청 절차**

주유소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 서류(석유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2. 허가기준**

**가. 인적 제한**

(1) 석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2) 일반대리점 경영자의 공급계약은 체결된 자

**나. 지역 제한**

(1) 주유소의 설치위치는 공화무 원표를 기준으로 한 도심 인경 5km 이상 외곽지역으로서 동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된 동일장소에 법령 정한 기간

경과 후 재허가시나 자동차 정류장(터미널) 내 설치시(터미널 수용차량에 한하여 이용 조건)는 예외로 한다.

(2) 주유소 상호간 거리(담 또는 외벽으로부터 상호간 직선거리)는 55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된 동일장소에 법령이 정한 기간 경과 후 재허가시나 자동차 정류장(터미널) 내의 설치허가(터미널 수용차량에 한하여 이용조건)시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허가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주유소 시설물 외벽으로부터 건설된 고소의 제초, 증점소 및 5톤 이상 저장시설의 외벽까지 140m 이상 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주유소 경계선으로부터 학교 경계선까지 2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한 교육구청장의 설치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주유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 놀이터 강제(외벽 또는 담장)로부터 직선거리 7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국회의사당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16광장에 이르는 대지 내에서는 국회의사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 가능한 지역이하여야 한다.

**다. 시설기준**

(1) 저장시설: 40년 이상수 저장할 수 있는 각종 저장시설이하여야 한다.

(2) 주유기: 4대 이상이어야 한다.

(3) 광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

설:1개소(남, 여 구분 설치하고 총 면적 10㎡ 이상)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431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취급 유종  
휘발유(고급, 보통, 무연), 경유, 동유에 한한다.

3. 제출서류

가.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나. 토지동기부 등본  
다. 공증된 토지주의 사망승락서(타인 토지의 경우에 한함)

라. 인근 주유소, 다른 위험물 취급시설, 공동주택 및 학교 외의 거리측정 도면

4. 허가신청 처리

가. 제출서류가 완비되면 관원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주유소 허가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 후 처리한다.

나. 동일지역에 경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출서류를 완벽하여 접수된 순위로 하되 동일자 접수분에 대하여는 인근 기존 주유소와의 거리측정결과 원거리를 우선 처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성격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허가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보며 장소이

전 허가시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처리 중에 있는 주유소의 허가처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2. 허가기준 중 나. 지역제한 (2) 주유소 상호간 거리기준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④(폐지) 종전의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 관한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45호(1989.2.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74호(1989.2.22))"는 이를 폐지한다.

구 고 시

●서대문구고시제1991-5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2호(73.11.28)로 시설결정 및 지리고시된 서대문구 남가좌동 78-38~80-25와 78-38~73-419간 도로의 설을 실시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공고 제112호(91.9.16)로 공람공고된 도시계획사업을,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11. 6

서 대 문 구 청 장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비 고
서대문구 남가좌동 78-38~80-25, 78-38~73-419	도시계획사업(도로)	남가좌동 78-38~80-25, 78-38~73-419간 도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B=6m×2열 L=300m	

가. 사업의 시행자:서대문구청장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2.12.31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세:별첨조서 참조  
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조서 참조

토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	수용토지		수용자		이해관계인		비 고
				지 번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남가좌동 73-483	대	55	73-483	55	남가좌동 73-275	김 태 권			
2	73-484	"	48	73-484	48	남가좌동 338-41	양 원 철			
3	73-419	"	579	73-419	330	남기좌동 53-275	김 태 권			
4	73-485	"	53	73-485	53	"	" 기 순			
5	73-486	"	139	73-486	68	남가좌동 73-239	오 풍 광			
6	73-496	도로	28	73-495	17	망원동 400-18	조 영 완			
7	73-487	대	99	73-487	68.1	연희동 520-85	박 상 규	종로구 서린동 97	박 정 희	공 동 계 산 인
8	73-438	도	512	73-438 73-499	21 183	종로구 서린동 97	박 상 규	" 성북구 수유동 472-39	정 기 창 한 백	회 주 성 관 리 인
9	73-488	대	75	73-488	60	남가좌동 73-246	김 준 배			
10	73-496	도	13	73-496	13	망원동 400-18	조 흥 평			
11	73-489	대	38	73-489	38	남기좌동 73-248	민 유 권			
12	73-490	"	3	73-490	3	남기좌동 73-350	김 태 권			
13	73-38	"	1,916	73-38	1,373	남기좌동 73-275	김 태 권			
14	73-494	도	101	73-494	101	서울시				
15	73-53	"	160	73-53	160	"				
16	76-22	전	23	76-22	23	국				
17	76-166	"	43	76-166	43	서울시				
18	76-24	"	54	76-24	54	"				
19	76-165	도	131	76-155	131	"				
20	77-4	전	36	77-4	36	"				

23-8

0 179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수용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1	남가좌동 77-5	도	106	77-5	106	서울시				
22	80-15	전	18	80-15	18	"				
23	80-71	도	75	80-71	75	"				
24	319-15	"	2,116.7	319-15	2,116.7	서울시 서대문구				
25	80-17	전	486	80-17	486	서울시				
26	80-19	"	169	80-19	169	"				
27	80-21	도	40	80-21	40	종로구 서린동 97	백상규			
28	80-23	전	126	80-23	126	서울시				
29	80-25	도	284	80-25	284	국유지				
30	319-33	"	91.9	319-33	91.9	서울시 서대문구				
31	318-12	"	1,115.1	318-12	1,115.1	"				

물 권 조 서

연번	지번	물건의 용도	구조 및 규격	건축면 적(㎡)	수용건축물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남가좌동 73-350	주거	연와 시멘와압	89.10	남가좌동 73-350	-	남가좌동 73-350	민강복			침대문 1식 담 L=5m
2	73-248	"	"	70.05	73-489	-	남가좌동 73-248	오병환			철내관 1식 담장 L=15m
3	73-246	"	"	76.66	73-246 73-488	2	남가좌동 73-10 남가좌동 73-246	김연수 김영			침대문 1식 담장 L=14m

연호	지번	물건의 용도	구조및 규격	면적 ㎡	수용건축물		유사		이해관계인		고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	남가좌동 73-2	주택	연와조 시멘와조	70.05	남가좌동	-	연희동 520-85	박영환			철대문 1식 담장 L=16m
5	73-486			73-487	-	남가좌동 73-239	유기순			철대문 1식 담장 L=18.5m 가설주차장 15㎡	
6	73-281	주택	연와조 시멘와조		73-485	26	남가좌동 73-275	김태권			철대문 1식 담장 L=3m
7	73-276			63.15	-485	26	남가좌동 338-41	양원철			철대문 1식 담장 L=13m 화강실 3㎡
8	73-275	주택및 점포	연와조 시멘와조		73-483	50	남가좌동 73-275	김태권			화강실 2㎡ 철대문 1식
9	73-419			73-419			남가좌동 73-275	김태권			차양대(작업장) 16㎡ 차양대 107㎡
10	78-53				78-38		"			가설창고 33㎡	
11	78-38				78-38		"			가설사무실 창고 및 차고 507㎡ 양철담장 L=42m	
12	332-26	주택	연와조 시멘와조	159.84	332-26		은평구 용암동 694-1 우성(주) 101-307	이용수			가설 1식 담장 L=18m

29-10

044471

제1308호

시

민

1991.1.6

●서대문구고시제1991-5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5호(83.2.24)로 시  
실질경 및 서대문구고시 제159호(83.3.19)  
지적고시인 서대문구 홍제동 157-85~  
156-334간 도로 개설을 실시코자 도시계  
획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

구공고 제112호(91.9.16)로 공람 광고된  
도시계획사업은,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11. .  
서 대 문 구 청 장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서대문구 홍제동 157-85 ~156-334간	도시계획사업(도로)	홍제동 157-85~156-334 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B=6m, L=174m

- 가. 사업의 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  
획인가일로부터 92.12.31
-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세서 : 별첨조서 참조
- 라.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  
첨조서 참조

토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	수용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지 번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홍제동 157-88	도로	361			서울특별시				
2	157-9	대지	100			홍제동 157-9	유 재 송			
3	157-84	"	43	157-108	29	은평구 신사농 140-1 미성④ 2-1205	한 규 범			
4	157-93	"	5.8	157-107	4	"	"			
5	157-13	"	96	157-109	2	홍제동 157-13	정 기 영	영등포구 의리도동 36-3	한국주택은행 (장위동지점)	근 지 당
6	157-22	"	20			서울특별시				
7	157-98	"	59	157-98	99	강동구 암사동 470-43 성동구 중곡동 96-14	신 남 기 박 상 우			
8	157-21	"	50	157-110	8	홍제동 157-21	박 안 순	영등포구 영등포동 6 가 18-1	영등포3동 새마을삼교	근 지 당
9	157-32	"	40	157-111	12	도봉구 상계동 322-8 오성연립 나-304	김 순			
10	157-33	"	73	157-112	18	홍제동 157-33	박 중 열	홍제동 103 중구 승무로4가 84-3	홍 제 4 동 새마을삼교 약 판 처	근 지 당 가 등 기
11	157-19	"	139	157-114	3	홍제동 157-19	오 규 상			
12	157-18	"	142	157-115	23	종로구 교복동 4-128	소 영 숙			
13	157-34	"	79	157-113	13	홍제동 157-34	안 난 순			
14	157-67	"	36	157-116	15	홍제동 156-67	김 각 실			
15	157-39	"	129	157-117	31	홍제동 157-39	이 연 석			

29-12

제 1608 호

시

보

1991.11.6

442

연번	지번	지목	수용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면적 (㎡)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6	홍제동 156-158	대지	50	156-581	3	홍제동 90-6 서강빌라 1-307	박 정 애		
17	156-159	"	106	156-582	14	홍제동 156-159	김 덕 래		
18	156-157	"	86	156-584	20	홍제동 156-157	윤 두 봉		
19	156-156	"	76	156-585	53	홍제동 156-156	강 만 근		
20	156-150	"	26			홍제동 156-153	전 성 태		
21	156-160	도로	152	156-583	41	홍제동 156-160	김 윤 석		
22	163-5	"	7			서대문구			
23	156-266	대지	98	156-586	19	홍제동 156-266	김 병 태		
24	156-267	"	53	156-267	53	"	"		
25	156-270	"	109	156-270		서대문구			
26	157-27	"	23			서울특별시			
27	156-334	"	261	156-587	75	홍제동 156-472	윤 인 술		
28	158-51	도로				서울특별시			

합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및 규격	건축면 적(㎡)	수용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홍제동 157-9	주택 및 근린생활용	철근콘크리트 시멘블럭조 물벽	89	26	홍제동 157-9	유재홍			
2	157-21	주 택		43	10	홍제동 157-21	이상근			
3	157-19	"		57	5					정폭 8m 단장 23m

29-14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용도	구조및 규격	건축면 적(m <sup>2</sup> )	수용면 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	홍제동 157-18	주택 점	시멘트블록 포평옥개	112	10	종로구 교북동 4-128	소양숙			철대문 1식 담장 5m (장독대 4m <sup>2</sup> )
5	157-32	주택	시멘트블록	35	11	홍제동 157-32	김명순			샷시문 1식
6	157-33	주택	시멘트블록 시멘트 의층	42	8	홍제동 157-33	박영철			담장 11m 철대문 1식
7	157-34	주택	시멘트블록 시멘트 기와	47	12	홍제동 157-34	안관순			담장 15m 석축 15m <sup>2</sup>
8	157-67 15	"	"	38	21	홍제동 157-67	김감실			화장실 3m <sup>2</sup> 담장 2m
9	157-39	"	벽돌	30	44	홍제동 157-39	박영철			석축 10m <sup>2</sup>
10	157-157	"	"	89	24					철대문 1식 화장실 4m <sup>2</sup> 담장 7m 창고 8m <sup>2</sup>
11	157-156	"	"	59	40					철대문 1식
12	156-266	"	시멘트 기와	55	5	홍제동 156-266	김병익			나무대문 1식 석축 14m <sup>2</sup> 장독대 12m <sup>2</sup>
13	156-267	"	"	32	32					나무대문 1식
14	156-270	"	시멘트 기와	82	6	홍제동 156-270	김명실			

제 1608 호

시

보

1991.11.6

4128

**●서대문구고시제1991-5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5호(83.2.24)로 시설결정 및 서대문구고시 제159호(83.3.19)로 지적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8-442~8-445간 도로개설을 실시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공고

제112호(91.9.16)로 농림공고된 도시계획 사업을,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1. 11. .  
 서 대 문 구 청 장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서대문구 홍은동 8-442~8-445간	도시계획사업(도로)	홍은동 8-442~8-445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B=6m, L=40.00m

- 가. 사업의 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2.12.31
-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조서 참조
- 라.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조서 참조

토 지 조 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수용토지		소유자		이행관제인		비고
			(㎡)	지번	면적(㎡)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홍은동 8-442	대	56	8-1142	25	홍은동 8-442	최종섭	마포구 아현동 572-79	이길동	근저당	
2	8-443	·	122	8-1147	30	홍은동 287-24	임태환				
3	8-445	·	149	8-1148	2	홍은동 8-445	조종관 김순희				
4	8-736	·	36	8-1148	5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원) 906-201	박신	영등포구 의도동 56-3	한국주택은행 (서대문지점)	근저당	
물 건 조 서											
연번	지번	물건의 용도	구조 구격	건축면 적(㎡)	수용면 적(㎡)	소유자		관제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홍은동 8-442	주거	벽돌 시멘트 구조	38	19	마포구 평동 13-31	김철성			당장 18㎡ 철대문 1식 장독대 2㎡ 석축 L=1.5m, H=1~2m 돌계단 1식 담장 2m	
2	8-443	·	주거	76	25	홍은동 8-443	조종관				
3	8-736	다 주 주거	벽돌 시멘트 구조	39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원) 906-201	박신			담장 2m	
4	8-445	주거	벽돌 시멘트 구조			홍은동 8-445	조종관 김순희			담장 1m	

29-16

1983. 11. 6

17



<p>◎서대문구고시제 1991-5 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182호(73.11.26)로 시 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대문구 남가좌동 207-2~78-38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을,</p>		<p>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도시계획 26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11. .</p> <p style="text-align: right;">서 대 문 구 청 장</p>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서대문구 남가좌동 207-2~78-38간	도시계획사업 (도로)	남가좌동 207-2~78- 38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당초 B=15~18m, L=160m 변경 B=6m 2열, L=160m
<p>가. 사업의 시행자: 서대문구청장</p> <p>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 획인가일로부터 92.12.31</p> <p>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외 소재 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세: 별첨조서 참조(변경)</p> <p>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조서 참조(변경)</p>			

토 지 및 물 건 준 서

제 1608 호

변 경 전										변 경 후									
지 번	지목	면적	수용토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 번	지목	면적	수용토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주소
남가좌동 73-130	대	175	73-130	175	의정부시 가능동 752-25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기무리 344-47	강상구		남가좌동 73-130	대	175	73-130	100	의정부시 가능동 752-25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44-47	강상구					
남가좌동 73-438	도로	512	73-438	37	종로구 서린동 97	백상규		-	-	-	-	-	-	-					

20-18

시

도

1991.11.6

4425

<p><b>◎서대문구고시제1991-58호</b>  <b>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b></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105호(83.2.24)로 시          실결정 및 서대문구고시 제159호(83.3.19)          로 지적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8-127~8-          -151간 도로개설을 실시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공고          제112호(91.9.16)로 동량공고된 도시계획</p>		<p>사업용,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11. .          서 대 문 구 청 장</p>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면적	사업의 규모
서대문구 홍은동 8- 127~8-151간	도시계획사업 (도로)	홍은동 8-127~8-151 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B=6m. L=50m.
<p>가. 사업의 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          획인가일로부터 92.12.31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세 : 별첨조서 참조 .          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조서 참조</p>			

##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용도	구조 및 규격	건축면 적(㎡)	수용면 적(㎡)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홍은동 8-124	주 택	연 와 조 시 멘 와 좁	33	1	홍은동 8-124	정 승 남			장실 4㎡ 철대문 1식 담장 15㎡ 장독 3㎡
2	8-125	"	시 멘 블럭	51	2	홍은동 8-127	장 락 원			철대문 1식 화장실 3㎡
3	8-127	"	복 소	39	26	"	장 현 준			나무대문 1식 담장 5㎡
4	8-128	"	"	"	"	"	국			"
5	8-148	"	연 와 조 슬 각 브 워 기 와	24	"	홍은동 8-148	임 경 필			철대문 1식 화단 5㎡ 나무(소) 13주
6	8-149	"	"	66	"	홍은동 8-149	기 재 선			철대문 1식 담장 10㎡ 나무(소 10주) 화단 6㎡
7	8-151	"	"	44	"	홍은동 8-207	김 정 환			담장 17㎡ 철대문 1식 난간 3㎡
8	8-1106	"	"	"	"	"	국			"
9	8-1115	도 로	"	"	"	"	"			"

토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	수용토지		소유자		해관계인		비고
				지 번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홍은동 8-124	대	86	8-1140	16	홍은동 8-124	정			
2	8-125	"	106	8-1141	7	홍은동 8-127	장 락 원			
3	8-127	"	63	8-1142	21	홍은동 산 1	장 현 준			
				8-1143	4					
4	8-128	"	1,812	8-128	1,812		국			
5	8-148	"	69	8-1144	15	홍은동 8-148	임 경 필			
6	8-149	"	165	8-1145	24	홍은동 8-149	기 계 신			
7	8-151	"	112	8-1146	27	홍은동 8-207	김 정 환			
8	8-1106	"	21	8-1106	21		국			
9	8-1115	도로	1	8-1115	1		국			

●서초구 고시제 1991-333호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허가  
변경(기간연기)

- 1. 강남구고시 제122호(87.7.18)로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허가된 서초구 우면동 17번지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기간연기)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11. 2

서 초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자 : 서초구 우면동 17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연구시설)
- 다. 사업의 규모 : 변경 없음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00번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이우재
- 마. 사업기간 : 당초 - 1987.7 ~ 1991.6.30  
변경 - 1987.7 ~ 1991.12.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의의 권리명세 : 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

구 공 고

●강서구공고제 1991-135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시고시 제1991-302호(91.10.18)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건설의고 강서구고시 제1991-33호(91.10.31)로 지적승인된 강서구 염창동 217-2,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거 관계 도서를 공고 합니다.
- 2.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한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3. 관계도서는 강서구 하수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시 공람공고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서 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 11 .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시행위치	면적(㎡)	사업기간	비 고
염창3우수배관펌프장 건설(방수설비)	염창동 217-2	2,129	91.11~92.12	

- 나.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소재지 : 별첨조서 참조(생략)
-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도면 참조 (생략)

- 마. 공람기간 : 1991.11~1991.11(14일간)
- 바. 공람장소 : 강서구청(하수과)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하수과 (TEL 600-6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b>●노원 구공고제1991-346호</b>  <b>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b></p> <p>1. 서울특별시 건설부에서 결정 지적승인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 합니다.</p> <p>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p>		<p>고로 대신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11. 4 노원구청장</p>			
<p>가. 사업개요</p>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공통2동	공통2동 350~441차 도로개설공사	B=8m L=330m	인가일로부터 92.12.31	서민 제60호 (74.5.11)	라
<p>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소재 :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 노원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기. 기타사항 : 의견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사업시행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구분	구번	구명	면적(㎡)	면적(㎡)	소재지	비고	비고	비고	비고
1	401-16	신도림동	114	114	신도림동	신도림동 340-686			
2	401-17	신도림동	95	95	신도림동	신도림동 340-686			
3	402-184	신도림동	49	49	신도림동	신도림동 375			
4	407-3	신도림동	20	20	신도림동				
5	409-93	신도림동	20	20	신도림동	신도림동 375			
7	409-12	신도림동	119	119	신도림동	신도림동 409-9			
8	483-1	신도림동	39	39	신도림동				
9	485-13	신도림동	507	507	신도림동				
10	485-14	신도림동	69	69	신도림동	신도림동 340-686			
11	488-2	신도림동	127	127	신도림동				
12	489-3	신도림동	769	769	신도림동				

29-24

4478



**사업소고시**

1991. 11.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고시

제1991-3호

도시계획사업(서울대공원)조성계획  
변경시행허가

1. 건설부고시 제595호(89.10.16) 서울특별시  
시고시 제471호(89.10.26)로 공원조성 계  
획변경 및 지적승인된 서울대공원 리프트  
카 시설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6  
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도시계획법 제24  
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  
계획 변경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가. 사업시행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366-3 의(서울대공원)

나. 부지면적:1,334.83㎡

다. 건축면적: 567.25㎡

라.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도시계획사업(공원)

- 명칭:서울대공원 리프트카

마. 사업시행변경 허가내역

- 사업기간:당초:1990.9.10~91.10.31

변경:1991.9.10~92.10.31

바. 사업시행자:동일산교(주)

대표이사 이춘식

사. 토지소유자:서울특별시

**사 령**

공무원 추서

●1991년 11월 4일자

영 제399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이영균	기능직 9등급(지방전기원)에 추서함.	상수도분부	지방전기원 (능력 10등급)

기능직공무원 면직

●1991년 11월 5일자

영 제400호

성 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김범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총무과	지방통신원사보 (기능직 10등급)

6급기술직 공무원 집계처분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0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처	직급
김무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2호에 의하여 파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토목사
유성근	"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기능직 공무원 파견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0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처	직급
김현숙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5조정관실 파견근무(91.11.6~92.3.31까지) (국민운동 심의관실 요원)	시의회사무국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등급
김경희	시의회사무국 의사과 파견근무(91.11.6~92.3.31까지)	교통방송본부	"
한상호	경찰부 파견근무(91.11.6~92.6.30까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위생원(사역)10등급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0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처	직급
서재실	지방운전원(기능직 10등급) 시보에 임함. 10등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규	
지방행정직 7급상당 공무원 신규임용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0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처	직급
지희경	지방행정직 7급 상당(부녀상담원)에 임함. 노원부녀복지원 근무를 명함.	신규	
정유진	지방행정직 7급 상당(지도교사)에 임함.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근무를 명함.	"	

4급행정직 공무원 전보 및 파견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1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상돈	내무국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91.11.6~92.11.5)	투자관리담당관	지방서기관
라진구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91.11.6~92.11.5)	내무국	
지방별정직 4급상당 공무원 직무대리 발령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1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노명환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시립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지방별정직 4급상당
3급행정직 공무원 전보 및 파견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1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송용석	내무국 지방공사 강남병원 파견근무 (91.11.6~92.11.5)	세종문화회관	지방부이사관
3급행정직 공무원 인사교류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1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반상균	동대문구 부구청장요원 전출	시립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지방부이사관
산하단체 임원(사장) 임명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19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영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리공사 사장에 임명 (91.11.6~94.11.5)	신규	

2·3등 공무원 진보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10호
성명	발령사항	현직위	직급
김성우	중구청장	보건사회국장	이사판
이호조	보건사회국장	내무국	부이사판
6급이하 공무원 징계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1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라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 2호에 의거 "징책"에 처함.	운수 1과	지방행정주사
송동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전책"에 처함.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산하단체 임원(사장) 면직			
◎1991년 11월 8일자			영 제412호
성명	발령사항	현직위	직급
이재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동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4급직위 행정직공무원 진보			
◎1991년 11월 6일자			영 제41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양복	기획관리실 부차관리담당관	진신담당관	지방서기관
문충선	시민생활국 소기자보호과장 직대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7급공무원 파견근무			
◎1991년 11월 8일자			영 제41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봉숙	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 (91.11.8~92.4.30)	마포부녀복지관	지방행정주사보
기능직공무원 면직			
◎1991년 11월 2일자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장두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앙하수처리장	지방전기원
		오니처리과	

공무국 여행명령통보						
●1991년 11월 5일자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리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기획관리실	빙정 2급	강홍민	중국	91.11.9 ~11.17 (9일간)	UN 및 중 해사 부담 신비(국외 특별규정 제외함)	UN 및 중 UN 및 중 대도시 지역 개발협력 사업 대표로 참가